

2007. 10.

# 其他案件審查報告書

-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  -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

總務委員會

# 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<input type="checkbox"/>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(7차)안	2007.09.05	2007.09.05	2007.10.09	2007.10.09	회계과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
#### 1) 제안이유

2007년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 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 
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) 주요내용

#####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

###### 사업계획

- 사업기간 : 2007~2008
- 위치 : 산척면 송강리 1253-1 외 9필지
- 부지면적 : 6,521m<sup>2</sup>
- 건축규모 : 1,024m<sup>2</sup>

- 사업비 증가내역
  - 당초 : 1,172,500천원
  - 변경 : 2,595,000천원(증 1,422,500천원)  
⇒ 부지매입비 370,500천원, 건축비 927,500천원

#### □ 변경사유

-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감정가액 상승
- 과소 책정된 건축비( $3.3\text{m}^2/2,492\text{천원}$ )를 현실에 맞게 조정  
⇒  $3.3\text{m}^2/5,483\text{천원}$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①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
##### ○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

본 건은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3억 7천만원, 건축비는 9억 2천 7백 5십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임.

토지매입비는 지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이며, 건축비는 건축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고 기타 설계용역 및 감리비, 부대비 등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므로

사업비를 증액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 
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
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. 답변 요지

##### ①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

▶ 질의 : 없음

#### 5. 심사 결과

- ①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 : 원안가결  
○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 : 원안가결

#### 6. 붙임

- 2007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 1부. 끝.